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인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356 발의연월일: 2024. 12. 10.

발 의 자:조인철·장종태·박용갑

이개호 • 한정애 • 안도걸

문진석 · 양부남 · 민형배

전진숙 · 위성곤 · 박민규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흥행장, 경기장, 역, 나루터, 정류장, 그 밖에 정하여진 요 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·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20만원 이 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암표매매를 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으나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, 인터넷,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웃돈을 얻 어 되파는 속칭 '되팔이'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개선하 고, 이러한 되팔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벌칙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흥행장, 경기장, 역, 항구, 정류장,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 뿐만 아니라 온라인, 인터

넷, 전자상거래,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도 웃돈을 받고 입장권·승차 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를 6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에 맞는 암표매 매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3항제3호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(암표매매) 흥행장, 경기장, 역, 항구(나루터를 포함한다), 정류장,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·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이나 온라인, 인터넷,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등을 통하여 웃돈을 받고 입장권·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경범죄의 종류) ① (생	제3조(경범죄의 종류) ① (현행과		
략)	같음)		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		
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			
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의 형			
으로 처벌한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4. (암표매매) 흥행장, 경기장,	<u><삭 제></u>		
역, 나루터, 정류장, 그 밖에			
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			
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			
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・			
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			
사람에게 되판 사람			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3		
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			
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의 형			
으로 처벌한다.			
1. ·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3. (암표매매) 흥행장, 경기장,		
	역, 항구(나루터를 포함한다),		
	정류장, 그 밖에 정하여진 요		
	금을 받고 입장·승차 또는		

승선시키는 곳이나 온라인, 인터넷, 전자상거래 또는 통 신판매 등을 통하여 웃돈을 받고 입장권·승차권 또는 승 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